

정 관



학교법인 대한신학대학원

학교법인 대한신학대학원 정관

(1996. 12. 6	제정)
(1997. 6. 10	1차 개정)
(1998. 6. 1	2차 개정)
(2000. 5. 29	3차 개정)
(2008. 4. 24	4차 개정)
(2009. 3. 9	5차 개정)
(2010. 5. 13	6차 개정)
(2015. 7. 11	7차 개정)
(2015. 8. 29	8차 개정)
(2015. 10. 31	9차 개정)
(2015. 12. 19	10차 개정)
(2016. 7. 2	11차 개정)
(2017. 2. 25	12차 개정)
(2018. 12. 1	13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성경적 신앙에 의거하고 장로회 신조를 기준하여 기독교 정신으로 인재양성을 위한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대한신학대학원(이하“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설치·경영한다.

제4조(주소) 이 법인의 주소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406번길 30에 둔다.<개정 2015.7.11>

제5조(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법인 및 학교의 사무기구와 정원에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확정하고, 이를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4.24>

제2장 자산과 회계

제1절 자산

제6조(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개정 2008.4.24>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2항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 재산에서 나는 과실과 수익 사업의 수입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8조의2(출연자의 정관기재) ① 일정한 재산을 출연한 자의 출연의사를 보호하고 그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본 법인 정관에 기재할 수 있다.

1. 출연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2. 출연재산의 내역과 평가기준·금액
3. 출연자의 출연의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자 외에 학교법인의 설립 이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한 자에 대하여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정관에 기재할 수 있다.<신설 2015.7.11>

제2절 회계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

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 회계는 일반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교직원 연봉 및 고용계약 포함)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9조의2(예·결산 보고 및 공시) ①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신설 2008.4.24>

② 제1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2008.4.24>

제10조(예산 외의 채무 부담) 수지 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 부담, 또는 권리 포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세제 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매년도 세제 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해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 재산으로 한다.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제3절 예산·결산자문위원회

제13조 삭제<2008.4.24>

제14조 삭제<2008.4.24>

제15조 삭제<2008.4.24>

제16조 삭제<2008.4.24>

제17조 삭제<2008.4.24>

제3장 기관

제1절 임원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이사 11인 (이사장 1인 포함)<개정 2008.4.24>
2. 감사 2인
- ② 제1항의 이사 중 3인은 개방이사로 한다.<신설 2008.4.24>
- ③ 삭제<2015.10.31>

제19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5년<개정 2015.8.29>
2. 감사 2년(다만, 1회에 한하여 중임 가능하다)<개정 2008.4.24>
-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임원의 선임 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②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자진사퇴의 경우에는 보고로 한다.<단서 신설 2008.4.24>
-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 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의2(개방이사의 자격)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건학이념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신설 2008.4.24>

제20조의3(개방이사의 선임) ① 이사장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개월 전)에 개방이사추천 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신설 2008.4.24>

- ② 이사장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 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위원회로부터 추

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신설 2008.4.24>
제20조의4(추천위원회의 구성) ① 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위원회에 두고,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며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8.4.24>

1.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2인
 2. 대학평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신설 2008.4.24>
③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신설 2008.4.24>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 이사회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4분의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08.4.24>

③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 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개정 2008.4.24>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개정 2008.4.24>

⑤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로 선임하며,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08.4.24>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신설 2008.4.24>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

제22조(이사장의 선출 방법과 그 임기 등)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선임한다.<개정 2008.4.24>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삭제<2008.4.24>

제2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

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4조(이사장의 직무 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②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④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에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6조(임원의 겸직 금지) ①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 또는 학교의 교원 및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6.7.2>

②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이 법인의 직원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③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신설 2008.4.24>

제2절 대학평의회<신설 2008.4.24>

제26조의2(대학평의회의 설치) 학교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회(이하 “평의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2008.4.24.>

제26조의3(평의회의 구성) 평의회는 교원, 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

는 자, 그리고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1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4.24>

1. 교원 4인
2. 직원 2인
3. 학생 2인
4. 동문 1인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인

제26조의4(평의원의 위촉) 평의원의 위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8.4.24>

1.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교수협의회에서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2.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직원협의회에서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3.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학생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4. 동문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동문회에서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제26조의5(평의원회 의장 등)<신설 2008.4.24>

-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 ④ 평의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26조의6(평의원의 임기)<신설 2008.4.24>

- ①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 평의원은 예외로 한다.
- ②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6조의7(평의원회의 기능)<신설 2008.4.24>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각각 자문에 한한다.

1. 대학교의 발전계획에 관한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현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추천에 관한 사항
7. 기타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의8(운영규정) 평의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5.7.11>

제3절 이사회

제27조(이사회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5.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6.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 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개정 2008.4.24>

② 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8.4.24.>

③ 이사회 회의는 임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은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8.12.1.>

제29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0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직무대행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 등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0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신설 2008.4.24>

① 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홈페이지를 통하여 3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 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08.4.24>

제31조(이사회소집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기 전에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회의 7일 이내에 회의 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5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단서 신설 2008.4.24>

제4장 수익사업

제32조(수익사업의 종류와 명칭 및 주소) ① 이 법인은 설치 학교의 운영을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원격평생교육원
2. 임대업
3. 어린이집<개정 2015.7.11>

② 제1항의 수익사업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경영한다.

1. 원격평생교육원
2. 임대업
3. 어린이집<개정 2015.7.11>

③ 제2항의 사업장 주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격평생교육원 : 서울시 금천구 시흥3동 971-6
2. 임대업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651-5 현대골드시티 305호
3. 어린이집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406번길 30<개정 2015.7.11>

제33조(관리인) ① 제32조에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할 경우 사업의 원만한 경영을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5장 해산

제34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4.24>

제35조(잔여 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개정 2015.12.19>

제36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08.4.24>

제6장 교직원

제1절 교원

제1관 임명

제37조(임명) ①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단서 신설 2008.4.24., 개정 2018.12.1.>

②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1. 교수 정년<개정 2015.8.29.>

2. 부교수 5년

3. 조교수 3년

4. 조교 1년

단, 신규임용시 조교수 2년 부교수 3년을 임기로 한다.

<개정 2015.7.11>

③ 삭제<2015.7.11>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권자가 교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임명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삭제<2015.7.11>

제37조의2(명예총장) ① 본교의 총장으로 봉직하여 학교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된 자를 이사장이 명예총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② 순수 명예직으로 실비 변상적 경비만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③ 학교 및 학사 운영에 참여할 수 없고 대리할 수 없다.

<개정 2015.8.29>

제38조(임시교원) ① 교원이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에는 그 기간 중 당해 교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임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임시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제2관 신분보장

제39조(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명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해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 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7. 자녀(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개정 2008.4.24>
8.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개정 2008.4.24>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신설 2008.4.24>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신설 2008.4.24>

제40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39조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제39조제2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39조제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4. 제39조제5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제39조제6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39조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해당 교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휴직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여교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4.24>
7. 제39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제39조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8.4.24>
9. 제39조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 · 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8.4.24>

제41조(휴직 중의 신분) ① 휴직 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39조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2조(휴직 교원의 처우) ① 제39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불한다. 다만 결핵성의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불한다.

② 제39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4.24>

제43조(직위 해제 및 해임) 교원의 직위해제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제58조 및 제58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4.24>

①-⑦삭제<2008.4.24>

제44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제45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의 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제56조를 준용한다.<개정 2008.4.24>
- ② 교원의 징계 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8.4.24>
- ③ 삭제<2008.4.24>

- 제46조(명예퇴직 수당) ①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 10년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불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액, 지급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47조(후임자 보충 발령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의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제48조(교원인사위원회)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9조(인사위원회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 조교를 임명 제청하고자 할 때의 그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장이 처장 등 보직교수의 보직 제청하고자 할 때 그 보직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3.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거나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인사위원회가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제청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

용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2.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50조(인사위원회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5인으로 구성하되, 조교수 이상의 교원과 5급 이상의 직원으로 조직한다.<개정 2009.3.9.>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51조(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2조(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3조(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의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이 모두 서명·날인한다.<개정 2018.12.1.>

제54조(인사위원의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55조(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2절 교원 징계위원회

제56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등)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기타 교원징계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사립학교법 및 동법시행령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08.4.24>

제57조 내지 제67조를 삭제한다. 삭제<2008.4.24>

제3절 사무직원

제68조(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 및 고용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② 일반직원의 신규 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③ 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69조(임용) ① 일반직원의 신규 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 해제,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 채용, 전형 또는 근무 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 규칙으로 정한다.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 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70조(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법령 및 규정에 준용한다.

제71조(보수) 일반 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 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 규칙으로 정한다.

제72조(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 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73조(징계 및 재심청구) ① 일반 직원의 징계 및 재심 청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 직원 징계 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개정 2009.3.9>

② 일반 직원의 재심 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적인 재심 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7장 직제

제1절 법인

- 제74조(법인 사무조직)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3급 이상으로 보한다.<개정 2008.4.24>
- ② 법인사무국에는 총무과를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개정 2008.4.24>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 업무를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대학원대학교

- 제75조(총장 등) ① 학교에 총장을 둔다.
- ② 총장은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 ③ 총장 유고시 총장의 직무대행자는 이사장이 정한다. 다만 이사장은 이를 이사회에 즉시 보고하고 6개월 이내에 총장 선임 절차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5.7.11>
- ④ 삭제<2008.4.24>

- 제76조(하부조직) ① 학교에 행정본부를 둔다.<개정 2015.7.11>
- ② 행정본부에는 교목과, 교무과, 재무과, 총무과, 학생과를 둔다. 단 필요한 경우 기획과를 둘 수 있다. 행정본부의 장은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7.11>
- ③ 행정본부의 각 과장은 조교수이상 교원 또는 5급 이상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15.7.11>
- ④ 행정본부의 각 부서의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7.11>
-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⑥ 삭제<2008.4.24>
- ⑦ 삭제<2008.4.24>
- ⑧ 삭제<2008.4.24>

제77조(부속시설) ① 대학원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② 부속시설에는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의 장은 조교수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2018.12.1.>

③ 부속시설의 장은 이사장의 임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 한다.<개정 2008.4.24.>

④ 부속시설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77조의 2(사회복지시설운영) 대학원대학교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요양보호사 등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 등을 둘 수 있고 관계기관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위탁업무 및 사업을 할 수 있다.<신설 2008.4.24>

제78조(도서관)<개정 2008.4.24>

① 도서관에 사서를 두고 8급 이상으로 보한다.

② 삭제<2008.4.24>

제3절 정원

제79조(정원) 법인 및 각급 학교에 두는 일반 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8장 보칙

제80조(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국민일보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8.4.24>

제81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조문조정 2008.4.24>

제82조(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조문조정 2008.4.24>

직명	성명	생년월일	임기	주소
이사장	황만재	1935.12.5	4년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132-3
이사	최재선	1938.1.25	4년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1동 169-35
이사	김의환	1933.11.19	4년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5동 삼호A102-603
이사	한석관	1939.1.10	4년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65-215
이사	신현기	1935.12.20	2년	충북 충주시 노은면 연하리 531
이사	박기수	1938.4.26	2년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9동 1542-10
이사	양용주	1938.11.20	2년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33-2
이사	문영기	1938.2.28	2년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2동 218-40
이사	이경성	1936.2.10	1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3동 4937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설치·경영 학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 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7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0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조와 제89조는 제81조와 제82조로 각각 정정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록

별표1 법인 일반직원 정원

<개정 2017.2.25>

총계 3명

2급 1명

4급 1명

8급 1명

별표2 학교 일반직원 정원

<개정 2017.2.25>

총계 14명

일반직 계13명

2급1명 3급1명 4급1명 5급1명 6급1명

7급2명 8급3명 9급3명

기술직 계 1명

8급 1명(사서서기)